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 - 73호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조례」제정을 위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0일

대 전 광 역 시 의 회 의 장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지역경제의 선순환과 건강한 공동체 조성을 위하여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을 통해 대전광역시의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고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전광역시장과 사회적경제조직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및 제4

조).

- 나.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 다.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 라.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 마. 대전광역시장으로 하여금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
- 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 23조).

3. 의견제출

가.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의장(참조 : 복지환경 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기재)
- 다. 의견 제출할 곳: 우35242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복지환경전문위원실 (전화 042-270-5127, FAX 042-270-5039, E-mail: ychml1@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4. 제정 조례안 : 붙임

대전광역시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경제의 선순환과 건강한 공동체 조성을 위한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의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과 활성화에 기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사회적경제"란 사회 구성원 간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독립적이고 자율적이며, 민주적인 조직 운영을 통해 양극화 해소, 지역경제 선순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통합과 공동의 이익 추구를 위해 사회적경제조직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
- 2.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면서 재화 및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소비 등 영업활동을 하는 사업조직으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 호에 따른 마을기업

-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 마.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4에 따라 재정지원 등을 받는 법인·조합·회 사·농어업법인·단체
- 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과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 사.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지역 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제112조의2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 아.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 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제113조의2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 자. 「산림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역산림조합, 품목별·업종별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및 제86조의2에 따른 조합공동사업 법인
- 차.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과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
- 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 타. 그 밖에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여 공고

하는 법인 또는 단체

- 3. "사회적가치"란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 로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한다.
 - 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
 - 나 취약계층의 고용기회 증진
 - 다. 지역경제의 활성화
 - 라.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 마. 윤리적 생산과 유통
 - 바. 근로·생활환경의 안전
 - 사.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 아. 민주적 의사결정과 국민참여
- 4. "사회적경제조직"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법인·단체, 이에 준하는 형태의 조직 또는 사업범위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사회적경제기업
 - 나. 사회적경제연대조직
 - 다. 그 밖에 사회적경제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인정 되는 조직 중 시장이 공고하는 법인 또는 단체
- 5. "사회적경제연대조직"이란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활동교류 및 사

업협력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모여 법인이나 단체 등의 형태로 결성한 지역·업종·부문·분야·전국단위 협의체, 연합체 등의 연대조직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대전광역시의 각종 정책 수립과 사업 집행에 있어서 사회적경제와의 연계를 촉진하여 해당 정책과 사업 이 사회적가치 실현에 기여하도록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평가에 있어 자치구와 협력하고, 사회적경제조직 등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회적경제조직의 책무) ① 사회적경제조직은 사회적가치 실현 및 다른 사회적경제조직과의 협력과 연대를 통하여 사회적경제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사회적경제조직은 노동, 인권, 환경, 복지 등의 분야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며,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일관성을 가지고 노력 하는 사회적 사명을 실천해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사회적경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사회적경제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사회적경제위원회)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 2.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 3.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
- 2. 대전광역시 관련 실·국장
- 3.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장
- 4. 지역·부문·분야 단위 사회적경제조직을 대표하는 사람
- 5.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을 보유한 사람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⑥ 위원회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 경제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 제7조(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 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 인 경우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 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5년마다 사회 적경제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사회적경제 발전 목표와 중장기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 2. 사회적경제 추진과제와 전략에 관한 사항
 - 3. 자치구의 사회적경제 역량 강화와 지역간 협력에 관한 사항
 - 4. 사회적경제조직 간 협력과 네트워크 강화방안
 - 5. 사회적경제 발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안정적 조달방안
 - 6. 그 밖에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사회적경제 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 ④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시행 결과와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⑤ 기본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과 연계되어야 한다.
- 제10조(실태조사)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 및 지원 사업의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 제11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되는 사회적경제 발전에 관한 부문별 계획과 조화롭게 수립되어야 한다.
- 제12조(사회적경제지원센터)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지원센터는 유사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나 센터 등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13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 수립 및 사회적경제조직의 종합적 지원
 - 2.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 시행
 - 3. 사회적경제 기업 간의 협력 지원 및 지역 네트워크 구축·운영지 원

- 4.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과 사회적경제 기업 발굴 및 사업화 지원
- 5.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전문 컨설팅 지원
- 6.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흥보 및 교육 지원
- 7. 그 밖에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14조(지원센터의 위탁) 시장은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5조(경영지원)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통합적인 경영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수 있다.
- 제16조(재정지원)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 할 수 있다.
 - 1. 안정적 사업환경 조성 및 조기정착 지원 사업
 - 2. 신상품 개발 지원 사업
 - 3. 지역특화사업 지원
 - 4. 취약계층 일자리창출사업비 지원
 - 5.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 6. 그 밖에 사회적경제조직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17조(교육훈련) 시장은 사회적경제 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하

- 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8조(판로지원)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개척을 위하여 민간소비 촉진 등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의 민간소비 촉진을 위하여 사회적경제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공동판매장을 설치하고, 시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9조(사회적경제연대조직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적경제 연대조직의 협력체계 구축 및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0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대) 시장은 기업 및 단체 등이 사회적경 제기업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 업·중소기업·대학·단체 간 교류·협력체계의 구축과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21조(홍보)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홍보하고, 지원할 수 있다.
 - 1. 우수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 2.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흥보 지원
 - 3. 전문가 포럼, 워크숍 개최, 교육 등을 통한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
- 제22조(포상)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거

나, 지역사회 기여 등에 모범이 되는 기관·단체 또는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23조(위탁)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대전광역시의 출연기관이나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비용추계서

- 1. 의안명: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조례안
- 2.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가. 비용발생요인
 - 사회적경제위원회 운영,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위탁 운영,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지원, 재정지원, 교육훈련, 판로지원, 사회적경제연대 조직의 지원, 사회적경제 홍보 등
 - 나. 관련조문
 - 제6조(사회적경제위원회)
 - 제12조(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제15조(경영지원)
 - 제16조(재정지원)
 - 제17조(교육훈련)
 - 제18조(판로지원)
 - 제19조(사회적경제연대조직 지원)
 - 제21조(홍보)
- 3. 비용 추계결과
 - 가. 추계의 전제
 -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지원센터 개소 및 활성화 사업의 근거로 본 조례안을 활용하고자 함
 - 나. 추계 결과 : 11,190백만원(5차년도 사업의 합계 추산 결과임)
 - 다. 연도별 비용추계표(별첨)
 - 라. 재원조달방안 : 2020년 예산부터 신규사업 등으로 편성 요청
- 4. 그 밖에 비용추계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없음
- 5. 작성자 : 사회적경제과 행정6급 고장혁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٨	출	1,610,000	1,610,000	1,610,000	3,130,000	3,230,000	11,190,000
위원회 운영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50,000
센터 위탁운영		0	0	0	1,500,000	1,600,000	3,100,000
단계별 성장 지원		1,130,000	1,130,000	1,130,000	1,130,000	1,130,000	5,650,000
협동조합생태계 조성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500,000
홍보(인식확산)		130,000	130,000	130,000	150,000	150,000	690,000
재원 조달		1,610,000	1,610,000	1,610,000	3,130,000	3,230,000	11,190,000
의존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610,000	1,610,000	1,610,000	3,130,000	3,230,000	11,190,000
	지방세	1,610,000	1,610,000	1,610,000	3,130,000	3,230,000	11,190,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특별회계							
	기 타						